

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

사 건 2000가합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는바(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○.에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 받았습니다.),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 🛇 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○민사부 귀중

소취하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 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26💆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6항) 제 출 부 수 진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•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 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 고,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,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(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, 제3항, 제6항), 위 서식은 이 경우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제출하는 서면임. ·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(민사소송법 제271조),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 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 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,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 용 할 수 없고,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(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298 판결). 7] ・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(현행 민사 소송법 제90조 제2항)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, 소송대리인 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같 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침(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므40 판결). ·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고, 필요적 공동소송도 아닌 사건에서 공동소송의 한 사람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른 피고가 다툴 수는 없음(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다1965 판결).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, 항소취하 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님(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다76 판결). •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음(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130 등 판결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